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8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9월 4일

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김 인 종

나. 제안이유

-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장려수당을 월15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

라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(〔별표9〕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)
- 지방공무원보수·수당업무처리지침(2003년 - 행정자치부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임.
-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업무처리 지침에 준하여 개정하였으며 동 지침은 27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